

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
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
수석전문위원 서정호

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
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임영은 의원 등 7인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23년 3월 7일
- 회부일자 : 2023년 3월 9일

3. 개정이유

-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미리 협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구성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.
- 자치경찰 정책에 대한 자문기구의 설치 및 활동비 지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-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을 비롯하여 직원에 대한 사기 진작에 필요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위원회 위원구성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 규정 신설(안 제4조의2)
 - 협의체 구성 : 위원장 1명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

- 협의체 운영 : 위원회 위원의 임기만료 60일 전부터 위원 구성이 완료되는 날까지 운영
- 위원회에 위원이 성별·경력별로 균형있게 포함되도록 노력
- 자문기구 설치 근거 신설(안 제15조)
- 자치경찰의 정책·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자문기구를 설치할 수 있음
-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아닌 직원에 대한 지원 규정 신설(안 제17조제2항)

5. 검토의견

금번 개정조례안은 2022년 1월 18일 개정된 「자치경찰사무와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구성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과, 자문기구 설치근거,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이외의 직원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,

첫째,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구성협의체를 두고, 그 운영은 위원회 위원의 임기만료 60일 전부터 위원 구성이 완료되는 날까지 하도록 하였으며,

둘째, 자치경찰의 정책·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

셋째,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직원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음.

본 개정안은 「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」 제4조의3에 따른 위원구성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과 자문기구의 설치 근거,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아닌 직원에 대한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붙임 : 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